[별표 17] <개정 2014.11.19.>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덕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00퍼센트 80퍼센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유 사 경 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비동일분야 경력: 80 퍼센트		
	근무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 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략: 50 퍼센트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 정하는 경력 3) 그 밖의 경력	100퍼센트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 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 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만, 행정・경영・연 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 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 후 경력만 해당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100퍼센트
	근무한 경력	100리 케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 사 경 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	100퍼센트
	당한다.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 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100퍼센트 이내. 다 만, 시간강사 등 경력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 다)	은 50퍼센트 이내의 범 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 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 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 기술 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